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3182호

제출년월일 2023. 3. . 제 출 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운송사업자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 설치 필요
- 나. 다만, 지자체 주차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최대 적재량 1.5톤이하 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.5톤 이하)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한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다.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총중량 3.5톤 이하의 소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를 포함하여 과도한 규제사항 개선
 - ※ 근거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3조 및 별표 1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)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(안 제3조)
- 나. "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"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 • 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1. 31. ~ 2. 20.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 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

나) 경 기 도 : 물류항만과

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4조제1항"을 "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2호 라목"을 "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라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1항제2호"를 "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"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"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"을 "이하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.5톤 이하)의"로 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	노관 실·과·소	대중교통과					
입	실·과·소장 성 명	대중교통과장 박 재 관					
안	팀 장 직위·성명	택시화물팀장 박 유 선					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 강 인 우(☎5918)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여객자동차</u>	제1조(목적) 「여객자동차
<u>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4조제1항</u>	<u>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</u>
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	<u> </u> <u> </u>
칙」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	
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	
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	
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	
적 부담감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	
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개인택시운송사업자"란 <u>「여</u>	1 [여
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	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
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	3조제2호라목
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	
다.	
2. 삭 제	
3. "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"란	3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	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
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	제1항제2호
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	
사업자를 말한다.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) 차	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)
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	

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(생략)
- 2. 삭 제
- 자동차 운송사업자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
- 1. (현행과 같음)
- 3. 최대 적재량 1.5톤 <u>이하의 화물자</u> 3. ----- <u>이하(특수자</u> 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 동차의 경우 총 중량 3.5톤 이하)의

참고 1

관계 법령 (발췌)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13조(허가기준)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〈개정 2018. 12. 31.〉

[별표 1]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(제13조 관련)

업종	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	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
구분		
허가기준	○ 20대 이상	○ 1대
대수		
사무실 및 영	○ 영업에 필요한 면적	○ 없음
업소	된 마 기 디 의 1 데 다. 의 미 기 디 의 Al	세다 원묘기도의이 기사이 나비를 고
	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	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
	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	한 면적. 다만,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
		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
		· 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
키기버 Ó		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
최저보유		량 1.5톤 이하(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
차고면적		량 3.5톤 이하)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
		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
		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
		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
		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화물자동차의	○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화물자	○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화물자
종류	동차 또는 특수자동차	동차 또는 특수자동차
	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	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. 다만, 집화
		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
		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
		및 장비기준을 갖추고, 화물을 집화·
업무형태		분류·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
		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
		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
		수행할 것
	<u> </u>	

참고 2 현행 자치법규

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4조제1항과 「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경영안 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개인택시운송사업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 - 2. 삭제 <2021. 7. 2.>
 - 3. "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" 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 [본조신설 2012. 7. 20., 2021. 7. 2.]
 - 4. "차고지" 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사업 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 <개정 2012. 7. 20.>
- 제3조(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)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김포시에 주 사무소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
 - 2. 삭제 <2021. 7. 2.>
 - 3. 최대 적재량 1.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〈신설 2012. 7. 20., 2021. 7. 2.〉
- 제4조(의무 등)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」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.